

# 인천시청역 한신더휴 | 당첨자 구비서류 안내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비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필수)	0		무주택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0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본인 발급용, 대리인발급분 접수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제3자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일 신규발급분 제외) 등
	0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확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상세"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 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정부 24에 발급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입증서류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및 본인,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확인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본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및 성년자인 세대원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변동사항, 성명, 주민번호 포함하여 발급
	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0		소득증빙 서류	본인 / 세대원	*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가구원 전원의 소득 입증자료(※소득서류 관련 안내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0		출입국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 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정부 24에 발급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입증서류 ([표1] 참조)
당첨자 추가서류 (해당자)	0		복무확인서	본인	* 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 외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로 신청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며,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세대원	* 견본주택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0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 <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는 경우 -> "신청결과" 조회내역 없음(인적사항 포함)에 대한 온라인 화면 출력 및 캡처서류 제출
제3자 대리인 추가서류	0		인감증명서		* 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인감도장 일치여부 확인
	0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또는 서명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대리인 본인 확인)
	0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기타	0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공동주택가격 확인원 등)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적격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미비 접수자가 불가하며, 상황에 따라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사진 서류검수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계약 시 구비서류로 같음하며, 상기 서류 외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상세표기"로 발급하여 제출 바랍니다.

본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 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청역 한신더휴 | 소득증빙서류 및 자산보유기준 안내 ①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 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 금액 증명 원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 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지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로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원본)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중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징수원부도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예정 신고서 (매입, 매출이 기재된 부분) ②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프리랜서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소득신고 미도래 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미발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원본) ② 해당 직장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 직장/ 세무서 ②, ③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 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건본주택에 비치)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 사실 없음)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인증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구분	자격기준	입증 서류
자격인증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 납부 인증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과 납부내역이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추가제출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 증명 ※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불가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① 세무서 ② 해당 직장 ③ 해당 직장/세무서

본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 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청역 한신더휴 | 소득증빙서류 및 자산보유기준 안내 ② |

##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 20%		100%초과~140%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초과, 자산총족	160% 초과, 자산 총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인가구	160% 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60% 초과, 자산 총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초과자 자산보유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상자 중 해당자 >

아래 부동산(건물+토지)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 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토지	토지 종류		토지 가액
	토지	농지	농지
도시		도시	도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가,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산보유(부동산 소유) 시 증빙서류 안내 [발급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의 인증서 필요']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사이트 접속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②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소유현황' 클릭	③ 결제화면으로 이동	④ 조회내역 없음
③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⑤ 결제방법 선택 및 결제 진행	⑤ 해당화면 인쇄(Ctrl+P)
④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 이용 안내 동의 후 '확인' 클릭	⑥ 미열람보기 > '열람' 클릭	<b>서류제출 시에</b> ⑥ 인쇄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인증서' 지참 필수 (건본주택에서 소유현황 확인)
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클릭(주민등록번호 공개)	⑦ 부동산 소유현황 '인쇄' 아래 증빙서류 안내에 따라 ⑧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격 합산(3.31억원 이하 확인)	
⑥ 증서 선택 후 암호 입력 > '확인' 클릭		
⑦ 팝업에서 '확인' 클릭		

## 자산보유(부동산 소유) 시 증빙서류 안내

건축물 종류		발급기관	발급방법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사이트 접속 > 공동주택공시가격 > 주소 입력 > 열람하기 > 출력
	주택 외	단독주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① 사이트 접속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 주소 입력 > 열람하기 > 출력 ② 사이트 접속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 시·군·구청 홈페이지 이동 > 주소 입력 > 검색 > 출력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	서울 소재지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사이트 접속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시가 표준액 조회 > 주소 입력 > 조회 > 상세보기 > 출력
	그 외 지역 소재지	위택스 (www.wetax.go.kr)	사이트 접속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주소 입력 > 검색 > 출력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사이트 접속 > 개별공시지가(없는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조회 > 시·군·구청 홈페이지 이동 > 주소 입력 > 조회 > 출력 ※ 면적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을 알 수 있는 서류 발급

본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 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